##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( 제정) 2015.05.08 조례 제1174호 (일부개정) 2015.12.03 조례 제1241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"효"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.
  - 2."효행"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.
  - 3."부모 등"이란「민법」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.
  - 4."경로"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.
  - 5. "4대 이상 가정" 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.
  - 6. "효도수당"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4대 이상 가정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.
- 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연도별 효행장려 계획) ①사천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은 「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 및 「경상남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경남도지사(이하"도지사"라 한다)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천시 교육지원청교육장(이하"교육장"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제5조(효의 달)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.
- **제6조(효행교육의 장려)** 시장은 사천시 관내의 유치원과 초·중·고등학교 및 평생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서 효행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7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경로당과 개인(이하"민 간단체"라 한다)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- 제8조(지원사업 등) ①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민간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
  - 2. 경로효친에 관한 재교육사업
  - 3.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 - 4. 효행가정 발굴 포상
  - 5. 경로당에서 시행하는 한자교실
  - 6. 그 밖에 시장이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  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시장에게 효행장려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③ 제1항의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강사에게는 「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13조제2 항을 준용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한다.
- ④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효행 우수자 표창)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한다.

- 제10조(효행장려수당 등 지급) ① 시장은 4대 이상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당 설·추석에 각 500,000원을 지급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  - ② 효행장려수당은 4대 이상 가정의 가구원이 해당연도의 설·추석에 속하는 달에 신청하여야 하고, 시 장은 해당연도의 설·추석 전에 지급한다.
- 제11조(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 등) ① 효행장려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읍·면·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  -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.
  - ④ 시장은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장려수당 지급대장을 기록·관리하여 이 하다
- 제12조(지급중지 및 환수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 야 한다.
  - 1. 직계존속,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
  - 2. 효도대상자가 효행장려수당의 수령을 거부한 때
  - 3.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
  -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효행장려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,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의 절차에 따라 환수조치 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<2015.5.8.>

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「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 수당 지급조례」는 폐지한다.

## 부 칙<2015.12.03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